

2018년 부산광역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 추가모집 공고

부산광역시립예술단과 함께 할 비상임 단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.

2018. 6. 21.

부산광역시립예술단장

1. 모집개요 및 전형일정(응시 접수결과 및 예술단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)

모집부문 및 인원			실기전형 과목	실기 ·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	합격자발표
국악 관현악단	비상임 (1)	경기민요 1명	5. 세부전형일정 참조 (예술단별 전형과목 및 유의사항)	• 실기: '18.7.10. 14시 / 국악관현악단 연습실 ※ 실기 순서 추첨 13시(시간영수) • 면접: '18.7.17. 10시 / 관리동 1층 회의실 ※ 실기합격자에 한하여 면접	• 실기: '18.7.13.14시 • 최종: '18.7.19.14시
극단	비상임 (2)	배우 2명	5. 세부전형일정 참조 (예술단별 전형과목 및 유의사항)	• 실기: '18.7.11. 14시 / (재)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※ 실기 순서 추첨 13시(시간영수) • 면접: '18.7.17. 10시 / 관리동 1층 회의실 ※ 실기합격자에 한하여 면접	• 발표일은 변경가능 • '18.8.1. 임용예정

2. 응시자격
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지역 및 학력 제한은 없으며, 모집 예술단별 단원으로서의 실력을 갖춘 자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※ 응시 제외: 원서접수일 기준, 부산시립예술단 비상임단원으로 2회 이상 재직경험 있는 자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 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3. 공고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2018. 06. 21. ~ 07. 04. ▶ 14일 간
- 접수기간 : 2018. 06. 25. ~ 07. 04. 17:00한
- 접수방법 : 전자우편(e-mail) 접수
 - (재)부산문화회관 전자우편 bsculture1@bscc.or.kr 으로 서류 제출
 - ※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(7.4. 17:00)이후 도착한 서류는 접수처리 하지 않음
- 제출서류 : 응시원서 1부 <별지 제1호>, 이력서 1부 <별지 제2호>
 - ※ 증명서는 면접전형 당일 제출(졸업증명서, 경력 및 재직증명서 등)
 - ※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초본,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 결과 각 1통 및 최종합격자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
- 접수처 :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사무국(☎051-607-3103)
 - 국악관현악단(☎051-607-3124), 극단(☎051-607-3125)

4. 제출서류

- 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 - ① 응시원서 1부 <별지 제1호 서식>
 - ② 이력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- 나. 증빙서류 : 실기전형 통과 시 면접전형 당일 제출
 - ① 주민등록초본 1부
 - ② 학위증서(졸업증명서) 1부
 - ▷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,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사본 제출
 - ③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
 - ④ 각종 증빙자료 1부
 - ⑤ 기타 첨부자료 1부

5. 실기 전형과목 및 유의사항

가. 국악관현악단 (문의 : 607-3124)

- 전형시 연주복 착용, 암보해서 연주, 심사위원과 응시자 간 칸막이 없음(자세)

단체	파트	실기전형 과목
국악관현악단	경기민요	지정곡(50점) : 회심곡, 노래가락 창작곡(50점) : 초견시창보 당일 제시함

나. 극단 (문의 : 607-3125)

단체	파트	실기전형 과목
극단	배우	자유(80점) : 자유 연기 (5분 이내) 특기(20점) : 노래, 춤 등 (3분 이내)

6. 합격자 결정방법

- 실기전형 평균점수 8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동점자 처리기준
 - 수석(부)지휘자 또는 예술감독이 평가한 점수가 높은 자(고득점자)
- 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 또는 퇴사(3개월 내)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실기전형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제척(회피) 사유 발생 시 처리 기준
 - 응시자의 사사 또는 친인척 등 전형위원으로 위촉 시 해당 전형위원의 점수를 제하고 합산·평균 처리
- 가점 : 응시원서 제출 시 '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'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(실기전형 적용) ▷ 증명서 : 실기전형 당일 제출

6. 참고(유의)사항
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실기전형 순서 추첨 시간 엄수
-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임
- 보수 및 복무 등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, 동법 시행규칙,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정에 따름
-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촉 후라도 위촉이 취소 될 수 있음
- 제출서류 기재착오,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
법정 채용 가산점

□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따라 가점부여함

부여대상	부여기준 (각전형별)	비고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 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 공로자, 공상 공무원, 특별공로 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3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	10%	국가유공자등에 우대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2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	5%	
1.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2.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	10%	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제16조
1. 애국지사의 가족 2.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3.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인	5%	
1.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 2. 재해사망 군경 및 재해사망 공무원의 배우자	10%	보훈보상 대상자지원에 관한법률 제33조
1.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	5%	
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	10%	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 한법률 제7조
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가족	5%	
1.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2. 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	10%	5.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
1.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가족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2.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3.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이 사망한 5·18민주유공자의 제매(弟妹)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	5%	
1. 특수임무 사망자의 유족 및 행방불명자의 가족 2.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	10%	
1.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의 가족 2.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3.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(弟妹)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	5%	특수임무수행자지 원및단체 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